

문서번호	총무과-8526
결재일자	2016.4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456호

주무관	인사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윤현상	김기석	서문석	고재식	김경호	04/07 김기동
협 조					
	의회법무팀장	신수일			
	담당주사	김명기			

-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구민이 만족하는 조직구축 -
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

행 정 관 리 국
(총 무 과)

-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구민이 만족하는 조직구축 -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노령인구 증가, 일자리 증대 요구 등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,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**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**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**일부개정**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

1 **관 련 근 거**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(대통령령 제26922호, 2016. 1. 22.)
-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구민이 만족하는 조직구축 개편안
(구청장 방침, 2016. 4. .)

2 **개 정 이 유**

- 인구 고령화, 일자리 증대 요구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복지기능 강화
- 국·부서·팀간 적정 업무량 유지 및 민원·사업·지원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
- 미래 성장동력 개발 및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구현안 제시 등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 부응하는 행정조직 기틀 마련

3

개정내용

■ 담당관/과 폐지 및 신설 분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'정책홍보담당관' 폐지(→ 기획홍보과로 통합)
- 보건소 기능 재편 : 4과 1지소 → 3과 1지소(보건행정과 폐지)
- 일자리경제과를 '일자리정책과'와 '지역경제과'로 분과
- 어르신 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로 '어르신복지과' 신설

■ 과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디지털정보과를 '기획경제국'에서 '행정국'으로 이동

■ 국명 및 과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행정관리국 → 행정국
- 기획예산과 → 기획홍보과
- 도시디자인과 → 도시계획과
- 지적과 → 부동산정보과
- 안전치수방재과 → 안전치수과

■ 과 폐지·신설·소속변경 등에 따른 국장 분장사항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정책홍보담당관이 기획홍보과로 통합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에 '행정혁신', '심사분석', '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' 분장
- 디지털정보과가 행정국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의 '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'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■ 팀 신설 · 소속변경에 따른 분장사항 정비

-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업무 분장됨에 따라, 복지환경국장의 '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'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■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-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4

참 고 사 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 - 2) 입법예고(20일간) : 2016. 4. 6. ~ 4. 25.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신설, 폐지 등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노령인구 증가, 일자리 증대 요구 등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,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담당관/과 폐지 및 신설 분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‘정책홍보담당관’ 폐지(→ 기획홍보과로 통합)
- 보건소 기능 재편 : 4과 1지소 → 3과 1지소(보건행정과 폐지)
- 일자리경제과를 ‘일자리정책과’와 ‘지역경제과’로 분과
- 어르신 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로 ‘어르신복지과’ 신설

나. 과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디지털정보과를 ‘기획경제국’에서 ‘행정국’으로 이동

다. 국명, 과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행정관리국 → 행정국
- 기획예산과 → 기획홍보과
- 도시디자인과 → 도시계획과
- 지적과 → 부동산정보과
- 안전치수방재과 → 안전치수과

라. 과 폐지·신설·소속변경 등에 따른 국장 분장사항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정책홍보담당관이 기획홍보과로 통합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에 ‘행정혁신’, ‘심사분석’, ‘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’ 분장
- 디지털정보과가 행정국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의 ‘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’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마. 팀 신설·소속변경에 따른 분장사항 정비

-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업무 분장됨에 따라, 복지환경국장의 ‘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바.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-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(2) 입법예고 : 2016. 4. 6. ~ 4. 25.(20일)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
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
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
“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 본청의”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의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행정관리국)”을 “(행정국)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행정관리국”
을 “행정국”으로, “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”를 “문화체육과, 교육지원과 및
디지털정보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8호,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18.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- 19.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디지털정보과”를 “기획홍보과,
일자리정책과, 지역경제과, 재무과”로 하고, 제2항제1호, 제4호 및 제19호를 다음
과 같이 한다.

- 1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- 4.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
- 19. 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르신 복지과”로 하고, 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노인·여성복지·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“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지적과”를 “도시계획과, 건축과, 부동산 정보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안전치수방재과”를 “안전치수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에”로 한다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”를 “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다른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·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다른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행정기구의 변경·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“행정관리국”은 “행정국”, “정책홍보담당관”은 “기획홍보과”, “기획예산과”는 “기획홍보과”, “일자리경제과”는 “지역경제과”, “도시디자인과”는 “도시계획과”, “안전치수방재과”는 “안전치수과”, “보건행정과”는 “보건위생과”로 각각 개정하고,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“일자리정책과”, “어르신복지과”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“일자리경제과”, “사회복지과”는 각각 “일자리정책과”, “어르신복지과”로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-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4월 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노령인구 증가, 일자리 증대 요구 등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,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담당관/과 폐지 및 신설 분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'정책홍보담당관' 폐지(→ 기획홍보과로 통합)
- 보건소 기능 재편 : 4과 1지소 → 3과 1지소(보건행정과 폐지)
- 일자리경제과를 '일자리정책과'와 '지역경제과'로 분과
- 어르신 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로 '어르신복지과' 신설

나. 과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디지털정보과를 '기획경제국'에서 '행정국'으로 이동

다. 국명, 과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

- 행정관리국 → 행정국
- 기획예산과 → 기획홍보과
- 도시디자인과 → 도시계획과
- 지적과 → 부동산정보과
- 안전치수방재과 → 안전치수과

라. 과 폐지·신설·소속변경 등에 따른 국장 분장사항 정비

- 부구청장 직속 정책홍보담당관이 기획홍보과로 통합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에 ‘행정혁신’, ‘심사분석’, ‘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’ 분장
- 디지털정보과가 행정국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, 기획경제국장의 ‘정보화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’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마. 팀 신설·소속변경에 따른 분장사항 정비

-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업무 분장됨에 따라, 복지환경국장의 ‘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행정국장으로 분장

바.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-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 근거법령 조항 등 현행화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, ☎450-7113, FAX 2201-1988, E-mail : auhappy2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대표자)

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 -----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-----</p> <p>제2조(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 등) ① <u>구 본청의</u> -----</p> <p>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----- ----- 행정관리국· -----</p> <p>② ----- <u>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</u> -----</p> <p>제4조(행정관리국) ① 행정관리국에는 -----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 원과를 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17.(현행과 같음) 18. <신설> 19. <신설></p> <p>제5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 기획 <u>예산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디지털경제과,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구정의 기획·조정에 관한 사항</u> 2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</u> 5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</u> 18. (현행과 같음) 19. 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-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에 관한 규정」----- ----- 서울특별시 광진구 ----- -----</p> <p>제2조(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 등) ① <u>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<u>본청의</u> -----</p> <p>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----- ----- 행정국·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감사담당관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는----- ----- 문화체육과, 교육지원과 및 디지털정보과를 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17.(현행과 같음) <u>18.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19.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5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 기획 <u>홍보과, 일자리정책과, 지역경제과, 재무과,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</u> 2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</u> 5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삭제> 18. (현행과 같음) 19. <u>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복지환경국) ① ----- <u>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노인·여성복지·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</u> 12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복지환경국) ① ----- <u>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르신복지과,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11. <u>노인·여성복지·아동복지에 관한 사항</u> 12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도시관리국) ① ----- <u>주택과,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지적과</u> --- -----</p>	<p>제7조(도시관리국) ① ----- <u>주택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,</u> ----- -----</p>
<p>제8조(안전건설교통국) ① ----- ----- <u>안전치수방재과</u> ----- -----</p>	<p>제8조(안전건설교통국) ① ----- ----- <u>안전치수과</u> ----- -----</p>
<p>제10조(설치) ① <u>법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</u> ----- -----</p>	<p>제10조(설치) ① <u>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소관사무) ----- <u>제9조에</u> -----</p>	<p>제12조(소관사무) ----- <u>제11조에</u> -----</p>
<p>제13조(설치) ① <u>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.</u></p>	<p>제13조(설치) ① <u>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.</u>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**관련사항 없음**

2. 비용 추계결과

- **관련사항 없음**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 결과

다. 재원조달방안

3. 작성자 : 총무과 행정7급 윤 현 상

행정관리국 총무과장 서 문 석